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구합5928 상속취득세고지무효확인
원고(선정당사자)	A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5. 8. 18.
판 결 선 고	2015. 10. 6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,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 및 선정자 B, C, D에 대하여 2014. 7. 1. 한 취득세 43,230원 및 그 가산세 17,650원, 교육세 2,470원 및 그 가산세 740원, 농어촌특별세 3,080원 및 그 가산세 1,240원의 각 부과처분을, 망 E에 대하여 2014. 7. 1. 한 취득세 64,890원 및 그 가산세 26,700원, 교육세 3,710원 및 그 가산세 1,120원, 농어촌특별세 4,640원 및 그 가산세 1,88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F에 대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여 2014. 7. 1. 한 취득세 17,800원 및 그 가산세 7,890원, 교육세 1,020원 및 그 가산세 350원, 농어촌특별세 1,270원 및 그 가산세 56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G에 대하여 2014. 2. 3. 한 취득세 8,480원 및 그 가산세 3,760원, 교육세 490원 및 그 가산세 170원, 농어촌특별세 610원 및 그 가산세 27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H에 대하여 2014. 2. 3. 한 취득세 8,480원 및 그 가산세 3,750원, 교육세 480원 및 그 가산세 160원, 농어촌특별세 600원 및 그 가산세 26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I에 대하여 2014. 2. 3. 한 취득세 8,470원 및 그 가산세 3,750원, 교육세 480원 및 그 가산세 150원, 농어촌특별세 600원 및 그 가산세 26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J에 대하여 2014. 7. 1. 한 취득세 21,430원 및 그 가산세 9,490원, 교육세 1,230원 및 그 가산세 410원, 농어촌특별세 1,530원 및 그 가산세 68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K에 대하여 2014. 2. 3. 한 취득세 10,900원 및 그 가산세 4,830원, 교육세 620원 및 그 가산세 210원, 농어촌특별세 780원 및 그 가산세 340원의 부과처분을, 선정자 L에 대하여 2014. 2. 3. 한 취득세 10,900원 및 그 가산세 4,830원, 교육세 620원 및 그 가산세 210원, 농어촌특별세 770원 및 그 가산세 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[redacted]시 M 임야 1,941㎡ 중 1/6 지분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80. 5. 30.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0. 6. 2.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나. N는 그 처인 E과 사이에 원고, O(2001. 3. 7. 사망), P(1996. 7. 20. 사망), Q(1961. 8. 7. 사망), 선정자 B, C, D 등 7명의 자녀를 두었고, O은 그 처인 선정자 F과 사이에 선정자 G, H, I 등 3명의 자녀를, P는 그 처인 선정자 J과 사이에 선정자 K, L 등 2명의 자녀를 두었다.

다. N는 2011. 5. 15. 사망하여 E과 원고 및 선정자들(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'원고들'이라 한다)이 각 상속지분별로 N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.

라. 피고는, E과 원고 및 선정자 B, C, D가 피상속인 N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취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등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, 2013. 9. 27. E과 원고 및 선정자 B, C, D에게 해당 취득세 등(가산세 포함, 이하 같다)을 부과하였다.

마. 그 후 피고는 선정자 F, G, H, I, J, K, L의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4. 2. 3. 위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취득세 등을 부과·고지하는 한편, 이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4. 7. 1. E과 원고 및 선정자 B, C, D, F, J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한 각 세액을 증액 경정·고지하였는데,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(이하 선정자 G, H, I, K, L에 대한 2014. 2. 3.자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E, 원고, 선정자 B, C, D, F, J에 대한 2014. 7. 1.자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성명	부과일	취득세(원)		교육세(원)		농어촌특별세(원)		합계
		본세	가산세	본세	가산세	본세	가산세	
E	2013. 9. 27.	57,220	23,110	3,270	980	4,080	1,640	90,300
	2014. 7. 1.	7,670	3,590	440	140	560	240	12,640
	합계	64,890	26,700	3,710	1,120	4,640	1,880	102,94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성명	부과일	취득세(원)		교육세(원)		농어촌특별세(원)		합계
		본세	가산세	본세	가산세	본세	가산세	
A	2013. 9. 27.	38,150	15,410	2,180	650	2,720	1,090	60,20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43,230	17,650	2,470	740	3,080	1,240	68,410
B	2013. 9. 27.	38,150	15,410	2,180	650	2,720	1,090	60,20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43,230	17,650	2,470	740	3,080	1,240	68,410
C	2013. 9. 27.	38,150	15,410	2,180	650	2,720	1,090	60,20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43,230	17,650	2,470	740	3,080	1,240	68,410
D	2013. 9. 27.	38,150	15,410	2,180	650	2,720	1,090	60,20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43,230	17,650	2,470	740	3,080	1,240	68,410
F	2014. 2. 3.	12,720	5,650	730	260	910	410	20,68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17,800	7,890	1,020	350	1,270	560	28,890
G	2014. 2. 3.	8,480	3,760	490	170	610	270	13,780
H	2014. 2. 3.	8,480	3,750	480	160	600	260	13,730
I	2014. 2. 3.	8,470	3,750	480	150	600	260	13,710
J	2014. 2. 3.	16,350	7,250	940	320	1,170	530	26,560
	2014. 7. 1.	5,080	2,240	290	90	360	150	8,210
	합계	21,430	9,490	1,230	410	1,530	680	34,770
K	2014. 2. 3.	10,900	4,830	620	210	780	340	17,680
L	2014. 2. 3.	10,900	4,830	620	210	770	330	17,66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바. E은 2015. 4. 1.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0, 13, 14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는 [redacted]씨 [redacted]파 종중이 그 [redacted]인 N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N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, 피고가 이와 달리 N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상속인인 E 및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.

나. 판단

1)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·수익·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,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소정의 '부동산의 취득'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(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). 또한,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,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,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(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917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. 6. 2.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N는 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외적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그리고 E 및 원고들은 2011. 5. 15. N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, 위 상속인들이 법정기간(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) 내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, E 및 원고들은 위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N의 지위 및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따라서 E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들에게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민석

판사 김선아

판사 이광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1

선정자 목록

1. A
2. B
3. C
4. D
5. F
6. G
7. H
8. I
9. J
10. K
11. L. 끝.